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9. 26

다. 상 정 일 자 : 2001. 9. 25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임 양 환

나. 개정사유

○ '99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 성적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시 학년석차를 내지않고 「성적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 동 조례와 부합되도록 자구를 수정코자함.

다. 주요내용

○ 조례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으로 개정 (안 제12조 1항 1호)

○ 조례중 “시약서(별지 제3호 서식)1통”은 삭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학년 석차제를 폐지하고 「성적평정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 종전에는 100분의 20이내의 고등학생과, 100분의 50이내의 특수목적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하였으나, 이제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조례안을 변경 하는것임.
- 이는 학급 학교의 성적관리제도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으나, 「학교별 선발인원」의 배정과 「장학생의 자격요건별」 배정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1. 9. 10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1999년부터 각 학교 학업 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성적이 학년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 평정 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조례중 “학업성적이 당해 선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 를 “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 으로 개정(안 제12조 1항 1호)
- 조례중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 은 삭제

3. 관련법령 및 근거

- 1999년도 성적평정 환산제 변경에 따른 학교장 건의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1항1호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 한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 학생”으로 한다.

제13조2호는 삭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생략)</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p> <p>2. ~ 3.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13조(지원신청) 생략</p> <p>1. (생략)</p> <p>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동</p> <p>3. (생략)</p>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현행과같음)</p> <p>1.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1</p> <p>2. ~ 3.(현행과 같음)</p> <p>②~ ③(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원신청)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 현 행 】

(별지 제1호 서식)

화순군 장학금 신청서

① 성 명	(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⑤ 사 진 3.5×5.0cm
		-	
③ 현 주 소			
④ 재 직 학 교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친 권 자 (또는 법정 대리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직 업	⑨ 주 소	⑩ 지원자와의 계 관

본인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 첨 부 : 1. 성적증명서 1 통
2. 주민등록등본 1 통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전학년 석차	평균성적(평점)
--------	----------

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 인

화순군수 귀하

【 개정안 】

(별지 제1호 서식)

화순군 장학금 신청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재적 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사 (또는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 통

년 월 일
 지원사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화순군수귀하

【 현 행 】

(별지 제2호 서식)

화 순 군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 글 :	주민등록번호						
	한 자 :							
연 주 소	(동 반)							
재적학교	<table border="1"> <tr> <td>학교</td> <td>학과</td> <td>학년</td> </tr> <tr> <td>(전공과목 :</td> <td colspan="2">)</td> </tr> </table>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화순군 출신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화순군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 부 끝.

19 년 월 일

추 천 자 (인)

화 순 군 수 기 하

【 개정안 】

(별지 제2호 서식)

화 순 군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 글 :	주민등록번호
	한 자 :	
현 주 소	(동 반)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화순군 출신이며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화순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 부 끝.

추천 순위	
----------	--

20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화순군수 귀하